

화학물질관리법 (2014. 2. 18 입법예고)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유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p>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p> <p>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p> <p>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p> <p>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p> <p>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p> <p>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p> <p>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p> <p>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p> <p>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p> <p>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p> <p>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p> <p>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p> <p>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p> <p>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p> <p>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p> <p>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p> <p>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p> <p>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p> <p>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p> <p>③ 제1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기술 		
<p>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p> <p>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 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p>	<p>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 및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2. 화학물질안전원 및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3.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p>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p> <p>⑥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p> <p>⑦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나 공공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관장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안전 관리 2.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p>② 전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p>④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책이나 계획 중에서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국가 단위의 시책이나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계획 2. 「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항공법」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3.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 4.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개정에 관한 계획 5.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까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시범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p>		<p>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p> <p>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p>		<p>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p> <p>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정보 <p>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계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명하거나,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p> <p>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의 화학물질 통계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의 신뢰성 분석과 통계 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그 밖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 	<p>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대상 화학물질, 취급시설 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 3. 조사방법·절차 및 추진체계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p>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의 신뢰성 분석과 배출량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배출량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⑧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p> <p>⑨ 제8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	제6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p>	<p>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p> <p>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비밀 또는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p> <p>3. 그 밖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위원회”라 한다)가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p>	<p>①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 임명한 공무원</p> <p>2. 대학교, 시민단체 또는 경제단체 소속으로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5명</p> <p>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p> <p>④ 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7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공개가 결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심의</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소명서(전자문서로 된 소명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소명서에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위원회는 소명서를 제출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재적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개대상자에게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공개가 결정된 정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p>		
<p>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p> <p>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p>		<p>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p> <p>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p> <p>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p> <p>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p> <p>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p> <p>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p> <p>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실험실 등 실내 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p> <p>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p> <p>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p> <p>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p>		<p>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p> <p>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p> <p>7.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p>
<p>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p> <p>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p> <p>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p> <p>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독물질 :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100킬로그램 <p>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보관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진열·보관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진열·보관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진열·보관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 보관·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명시한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확인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진열·보관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p> <p>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독물질 :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3,000킬로그램 <p>② 제1항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의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운반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행도로 상세 서류(출발부터 도착까지의 운반시간, 운반경로, 노선을 말한다) 2.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내역 <p>③ 제1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그 사본(전자문서로 된 운반계획서도 포함한다)을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p>		<p>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p>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관·저장 시설, 진열·보관 장소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용기, 포장 <p>②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③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별표 3의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p>	<p>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3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p>
<p>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p>		<p>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용 또는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수입·사용의 승인과 해당 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허가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전자문서로 된 허가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변경허가 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p> <p>가. 허가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p> <p>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100분의 2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라. 허가받은 물질의 용도</p> <p>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변경신고 사항 :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p>⑤ 제4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가 명확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확인증(전자문서로 된 허가증 또는 확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 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수입·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p>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p>	<p>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 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전자문서로 된 허가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제조·수입·사용의 한정 또는 허가 기간</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한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p>이 끝나기 20일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과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전자문서로 된 허가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p>⑧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p>	<p>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 	<p>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용도 상세내역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전자문</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는 경우</p>	<p>서로 된 허가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변경허가 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p> <p>가. 허가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p> <p>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라. 허가받은 물질의 용도</p> <p>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변경신고 사항 :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허가증 원본</p> <p>⑤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p>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확인증(전자문서로 된 허가증 또는 확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7조(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확인증을 포함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p>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 변경</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확인증 사본 <p>⑤ 제4항의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확인증(전자문서로 된 확인증을 포함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p> <p>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 		<p>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p> <p>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하는 자의 준수사항</p> <p>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III에 규정된 화학물질</p> <p>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V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p> <p>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수출승인서(전자문서로 된 수출승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의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p>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승인서 원본 <p>⑥ 제5항의 변경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 승인서(전자문서로 된 변경 승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p>	<p>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p> <p>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p> <p>3. 부탄가스</p>	
<p>제3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p>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p> <p>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p> <p>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p>		<p>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장 내의 증설, 설치 위치 변경,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기본 평가정보</p> <p>가.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p> <p>나.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p> <p>다.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p> <p>라. 기상 정보</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장외영향평가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의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p> <p>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2. 장외 평가정보 가. 공정 위험성 분석 나. 사고 시나리오,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라. 안전성 확보 방안</p> <p>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p> <p>② 제1항의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소량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제1호 가목·나목 및 제1항제3호의 자료만을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소량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취급시설의 위험도(공정위험성 및 사고가능성에 따라 고위험도, 중위험도, 저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여부 등을 명시한 별지 제32호서식의 검토결과서(전자문서로 된 검토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지 제33호서식의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조정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⑥ 그 밖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화학물질 안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를 말한다)을 갖추는 것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그 밖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p>②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의 중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까지의 사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p> <p>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가동 전에 제22조제1항의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화학사고의 발생이 우려되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④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2년을 말한다.</p> <p>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과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결과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p> <p>②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매 4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매 4년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매 8년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매 12년 <p>③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을 전후로 6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진단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p> <p>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p>		<p>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시급성,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개선사항과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전자문서로 된 취급시설 개선명령서를 포함한다)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서를 발부받은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이행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출하고, 이행계획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p>③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계획, 안전관리 계획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이행계획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에 수정·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시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이행계획서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이행결과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전자문서로 된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포함한다)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명령서를 발부받은 때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 		<p>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취급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 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있어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온도·압력계기의 비정상 작동으로 인해 유출·누출·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개인보호장구가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으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p>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p>		<p>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급 예정량에 관한 자료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명세서(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한다) 및 취급시설 별 매출액 기여도 3.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명세서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p>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p> <p>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가 있으면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p>		<p>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후견등기부 <p>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④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p> <p>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1항제2호의 장외 평가정보 2.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공정위험성, 유출·누출 시나리오 <p>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허가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변경 라. 제19조제1항제2호의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동일 사업장 내의 증설, 설치 위치 변경, 유해화학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변경신고사항: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전에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p> <p>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p> <p>제29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6호서식의 허가증(전자문서로 된 허가증을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p> <p>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의 훼손 또는 분</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p> <p>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확인증(전자문서로 된 확인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정보 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영업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p>
<p>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p> <p>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p>		<p>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1회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p> <p>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p> <p>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p>		<p>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로 한다.</p> <p>3.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인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인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p> <p>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업을 한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p>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p>		
<p>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p>		<p>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p> <p>④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 정보(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대표자성명, 주요생산품, 매출액을 포함한다)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포함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p>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의 완비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준수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이수 4.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 <p>③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계약 등에 정해진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p>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p>	<p>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 및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대한 총괄 관리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 및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대한 현장 실무 업무 수행 <p>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 기사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p>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직을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다음 각 목에 따라 선임하되,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수 5,000명당 1명을 추가적으로 선임한다. <p>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톤 미만인 경우 : 1명</p> <p>나.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톤 이상이고 10,000톤 미만인 경우 : 2명</p> <p>다.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톤 이상이</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p>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p> <p>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소지자</p> <p>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화학물질 취급현장의 안전·환경 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자</p> <p>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p> <p>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 	<p>고 100,000톤 미만인 경우 : 3명</p> <p>라.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0톤 이상이고 1,000,000톤 미만인 경우 : 4명</p> <p>마.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00톤 이상인 경우 : 5명</p> <p>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및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전자문서로 된 선임·해임·퇴직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확인증(전자문서로 된 확인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 대리자를 정하여 별지 제5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연장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수에 필요한 조치</p> <p>9.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p> <p>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조치</p> <p>11.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각종 조치</p> <p>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기간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⑤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퇴직에 따른 신고와 법 제32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과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p> <p>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p>	<p>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담당자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담당자 3.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판매 영업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종사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p>제35조(안전교육 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안전원 2. 협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p>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30일 이상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를 보유할 것</p> <p>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비를 부담하여야 한다.</p> <p>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자</p> <p>5.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담당자</p> <p>6.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p> <p>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p>	<p>행할 수 있는 교육장 및 인력을 갖출 것이다. 5년 이상의 화학물질 안전분야 교육실적을 갖출 것</p> <p>② 제1항제2호의 협회와 제1항제3호의 전문기관은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제36조(안전교육 계획) ① 제35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계획 4. 안전교육 교재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37조(안전교육 결과보고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는 제35조제1항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통계·배출량조사표 작성,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p> <p>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종사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분기별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p>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p>		<p>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한 경우</p> <p>3.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하는 등 작업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한 경우</p> <p>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으로의 배출이 없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p>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없도록 할 것 <p>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34조제1항 단서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7일 이내에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 		<p>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②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장소와 시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위반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이행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전자문서로 된 개선명령서를 포함한다)를 발부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p> <p>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10.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11.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p> <p>13.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p> <p>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p> <p>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p> <p>18.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p> <p>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p> <p>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2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p> <p>2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p> <p>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p>제14조(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1. 기간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영업정지의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p> <p>2. 1일당 과징금의 금액 :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p> <p>② 제1항제2호의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p> <p>1.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p> <p>2.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 제1호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을 해당 영업정지 대상 시설의 매출액 비율로 곱한 금액(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에서 해당 영업정지 대상 시설에서 직접 제조 후 판매한 금액 또는 자산 가치 비율을 곱한 금액 등의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③ 제1항에서 해당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산정시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p> <p>⑤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연간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연간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제4조제1항의 전문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 2.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 <p>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 중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p>	
<p>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p>		<p>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p>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p>		<p>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후견등기부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p> <p>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나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내역서 <p>②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p> <p>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 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업소 및 공동활용업소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2. 공동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약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p> <p>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 		<p>제45조(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수량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사고대비물질별 수량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p> <p>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제45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매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1조제1항의 각 호별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확인된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과거 5년간 화학사고 발생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의 사항만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p> <p>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p> <p>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p> <p>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위해관리계획서의 세부적 내용,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 그 밖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명시한 별지 제60호서식의 결과서(전자문서로 된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자에게 수정·보완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수정·보완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수정·보완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에는 자료의 수정·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p>		<p>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 대상이 되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법 제41조제1항제8호의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p> <p>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p> <p>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p> <p>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p> <p>③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주민을 말한다)에게 고지되는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서는 별지 제62호서식과 같다.</p> <p>②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해야 하는 자가 해당 고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p> <p>1.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서</p> <p>2. 고지 대상 명단 및 고지 방법</p> <p>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p> <p>1. 서면통지는 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p> <p>2. 개별설명 후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p> <p>3. 집합전달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고지방법 이외에도 일간신문, 관할 시청·구청·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해 대표 전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p>		
<p>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p>		<p>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통보)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p> <p>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p>		<p>제63호서식의 내용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의 즉시 신고 기준은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화학사고 양태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p>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속공무원으로서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연락 유지</p> <p>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p> <p>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p> <p>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사항</p> <p>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위해성</p> <p>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p> <p>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p> <p>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p>	<p>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법 제45</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p> <p>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조사단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조사단이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6조(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p> <p>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p> <p>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제거 조치,</p>		<p>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해당 화학물질로 인해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 조치명령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전자문서로 된 조치명령서를 포함한다)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발부받은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이행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계획서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전자문서로 된 이행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접수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이행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1항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시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학사고 특별관리계획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별관리지역 내 화학사고 발생현황과 화학물질 취급현황 3. 특별관리지역 내 화학사고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 	<p>보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4. 특별관리지역 내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5. 특별관리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6.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7. 특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소식지·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관리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CAS(Cheical Abstracts Service) 번호·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위험성·방제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시 이격거리, 화재시 이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p> <p>8. 화학물질,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p> <p>9.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p> <p>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하고 공유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평가·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협력하여야 한다.</p>
<p>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p>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 보고)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신고·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연간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연간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등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p> <p>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p> <p>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p> <p>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p> <p>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p> <p>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p> <p>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p> <p>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p> <p>9.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p> <p>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p> <p>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신뢰성을 1개월 이내에 검토한 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실적보고서 이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54조(사업장 또는 시설 등의 출입·검사) ①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 제49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는 경우</p> <p>7. 법 제25조, 법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p> <p>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p> <p>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p> <p>10.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사실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p> <p>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p> <p>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을 하려는 경우</p> <p>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p> <p>14.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p> <p>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안전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5. 한국환경공단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자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은 자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p>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p>		<p>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p> <p>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산서류를 포함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52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p>	<p>제21조(자료보호기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p>	<p>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22조(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 2.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취급량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사고 발생 시의 대응 방법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물리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7.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p>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 <p>② 영 제21조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연장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 또는 연장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영 제22조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결과서(전자문서로 된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p>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p>제59조(수수료)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허가 및 변경허가</p> <p>3.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p> <p>4.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p> <p>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p> <p>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p> <p>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p> <p>8.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p> <p>9.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p> <p>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p> <p>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p> <p>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p> <p>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폐업 신고</p>		
<p>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p>	<p>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2.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p>	<p>제60조(보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이 영 2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p> <p>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전후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3.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p> <p>4.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운영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p> <p>5.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p> <p>6.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입 검사 등에 관한 사항</p> <p>7.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사항</p> <p>8.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p> <p>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사항</p> <p>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 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p> <p>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p> <p>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p>	<p>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p> <p>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p> <p>8.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p> <p>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에 관한 사항</p> <p>10.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p> <p>11.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p> <p>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p> <p>13. 법 제31조에 따른 도급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p> <p>14.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p> <p>15.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p> <p>16.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p> <p>17.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18.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신고 등에 관한 사항</p> <p>19.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p> <p>20.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에 관한 사항</p> <p>21.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p> <p>22. 법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p> <p>23.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p> <p>24.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사항</p> <p>25. 법 제5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p> <p>26.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된 사항에 관한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2. 협회에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사항</p> <p>제24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 감독) ① 화학물 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사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협회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제7장 벌칙		
<p>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지키지 아니한 자</p> <p>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p> <p>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p> <p>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p>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p> <p>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p> <p>7.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p> <p>8.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p> <p>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p> <p>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전에 조치명</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p>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한 자</p> <p>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p>		
<p>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p> <p>6.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p> <p>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p> <p>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p> <p>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p> <p>2.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부칙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의 표시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받은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출승인서를 갱신·교부받은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대상 : 1년 이내 2.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 2년 이내 3.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 3년 이내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영향평가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 2년 이내 2.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 3년 이내 <p>제7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대상 : 1년 이내 2. 연간 취급량이 3,000톤 이상 : 2년 이내 3. 연간 취급량이 3,000톤 미만 : 3년 이내
제6조(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조치) 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대상 : 1년 이내 2. 연간 취급량이 3,000톤 이상 : 2년 이내 3. 연간 취급량이 3,000톤 미만 : 3년 이내
제9조(금지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지산 또는 한정재산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11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p>		<p>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험성평가"로 한다.</p> <p>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p> <p>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p>		<p>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p> <p>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p> <p>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p> <p>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p> <p>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로 한다.</p> <p>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p> <p>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p> <p>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p> <p>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p> <p>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제1호·제6호 및 제61조제2호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p> <p>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 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p> <p>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p> <p>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p> <p><1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p> <p><1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p> <p><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p> <p><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p> <p><21>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2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p> <p><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p> <p><2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p> <p><2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p> <p><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p> <p><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p> <p><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2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